
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백선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02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6. 23.

발 의 자 : 백선희 · 황명선 · 서왕진
김준형 · 이학영 · 황운하
박은정 · 윤준병 · 한창민
손명수 · 이해민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군사법원법」 제23조 및 제24조는 군판사는 국방부 소속이고, 군법무관으로서 10년 이상 복무한 영관급 이상의 장교 중에서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음. 또한 같은 법 제41조는 군검사는 국방부장관이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음.

현행법에 따르면 군의 경우 장성급 장교만이 고위공직자에 포함되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이 됨. 군판사와 군검사의 경우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되더라도, 일반 판사 및 검사와 달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, 국방부 소속 검찰단장이 범죄의 기소여부를 결정하고 있음.

이는 사실상 군판사 및 군검사의 권력오남용이 제3의 기관에 의하여 견제되지 아니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체계라고 할 수 있음.

이에 군판사 및 군검사를 고위공직자에 포함하여 이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1호).

법률 제 호
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거목 중 “장교”를 “장교, 군판사 및 군검사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군판사 및 군검사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
1. “고위공직자”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(職)에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. 다만,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된다.	1. ----- ----- ----- -----.
가. ~ 하. (생략)	가. ~ 하. (현행과 같음)
거. 장성급 <u>장교</u>	거. ----- <u>장교, 군판사 및</u> <u>군검사</u>
너.·더. (생략)	너.·더. (현행과 같음)
2. ~ 5. (생략)	2. ~ 5. (현행과 같음)